

고 시

◆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-65호

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30호(2006.12.14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09-13호(2009.4.20)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2-32호(2012.3.8)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3-87호(2013.7.18) 사업시행변경인가, 도시개발과-2357호(2014.3.4)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4-68호(2014.7.3)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6-51호(2016.6.30)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하여
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08월 11 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
3. 시 행 면 적 : 32,218.5㎡
가. 택 지 : 18,115.7㎡ (공공청사 333㎡ 포함)
나. 정비기반시설

합 계	도 로	공 원	공공공지
14,102.8㎡	687.7㎡	12,346.4㎡	1,068.7㎡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이인재)
(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7, 2층)
5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변경인가일 ~ 30개월
6. 사업시행변경인가일 : 2016. 8. .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동작구 도시재생과 비치된 도서와 같음.
8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율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구분 건축계획	택지1(아파트)	택지2(공공청사)
대지면적	17,782.7 m ²	333m ²
건축면적	3,115,466m ²	165,86m ²
건 폐 율	17.52%	49.81%
연 면 적	68,939,781m ²	575.99m ²
용 적 율	260.14%	164.22%
층수(높이)	지하2/지상25층(71.8m)	지상4층(15.05m)
세 대 수	471	
주 용 도	공동주택(조합원, 일반분양) 아파트 및 임대주택	공공청사(지구대)

9. 주택의 규모 및 주택 건설계획

공급 구분	주택의 형태	동수	세대 수	주택규모별세대수(전용면적 기준, m ²)								
				38,16	59,97	71,25	72,08	72,32	72,67	84,88	84,91	84,94
계		7	471	84	22	35	25	45	24	45	166	25
분양	공동주택	6	387	-	22	35	25	45	24	45	166	25
임대	공동주택	1	84	84	-							

10. 법 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가. 관리청에 무상귀속 : 14,102.8m(도로 687.7m², 공원 12,346.4m², 공공공지 1,068.7m²)나. 국공유지 무상양도 : 592m²

11. 변경사유 : 편의개선을 위해 시공중 발생한 경미한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변경

12. 변경내용

가. 면적변경사항

구 분	당 초	변 경	비 고
구역면적	32,001,000m ²	32,218.5m ²	증) 217.5m ²
공동주택면적	67,040,007m ²	67,040,007m ²	변경없음
근린생활시설면적	1,899,774m ²	1,899,774m ²	변경없음

나. 세입자대책 세대(임대,주거,비대상)의 변동사항

내 용	대 상 세대수	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지급세대	주거이전비 지급세대	비대책 세 대	비 고
기 정	386	102	178	204	
변 경	387	103	178	204	

13. 기타 관련도서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 도시재생과(☎820-9809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